

경기도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비용 지원사업 공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하여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2조에 의거
『경기도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0 일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3. ~ 2022. 12.
- 사 업 비: 350백만원
- 지원대상: 전기사업법 제 7조에 의거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21년 사업개시신고를 수리한 100kW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아래의 지원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대표자가 경기도민이고 경기도 소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한하여 지원함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시행하거나 출자한 발전소는 지원하지 않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설치 의무화사업으로 설치된 설비는 지원하지 않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비 지원을 받은 설비는 지원하지 않음

2. 지원기준

- 지원금액: 신청인별 최대 100kW 이하 지원(kW당 최대 40,000원 지원)
 - 설비설치용량(kW) × 지원단가(원/kW)
 - ※지원단가(원/kW) = 총 예산(원) ÷ 총 접수용량(kW)
 - 용량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 확인증을 기준으로 하며 설비용량의 소수점 이하는 지원금액 산정 시 제외함 (소수점 버림)
 - ※ 예시: 설비용량 99.8kW → 지원용량 99.0kW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 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서 정관상에 에너지사업이 명시된 조합의 경우 설비용량의 20%를 가산하여 보조금 지급
 - 신청인(또는 법인)당 최대 100kW이하 지원 → 각 발전소별 합산 용량

■ 사업추진 예시

○ 사업비 / 총접수용량 : 350,000천원 / 34,000kW

○ kW당 지원금액 : (사업비) ÷ (총 접수용량) ※ 총접수용량은 (접수용량 + 가산용량)

⇒ $350,000,000\text{원} \div 34,000\text{kW} = 10,294.11 \approx 10,200\text{원} / 1\text{kW}$) 10원단위 절사

(예시1) 일반신청자 99.9kW(99kW) 발전소 지원 보조금 : 990,000원

⇒ $99\text{kW} \times 10,000\text{원} = 990,000\text{원}$

(예시2) 에너지협동조합 50kW 발전소 지원 보조금 (가산율 20%)

⇒ $\{ 50\text{kW} + (50 \times 20\%)\text{kW} \} \times 10,000\text{원} = 600,000\text{원}$

□ 지원시기: 접수완료 후 신청서류 검토하여 개별안내

3.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22. 4. 1.(09:00) ~ 2022. 4. 30.(18:00) (신청기간 이외 접수 불가)

□ 접수방법: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접수가능

○ 온라인 접수: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 (www.ggenergy.or.kr) -
지원사업 참여신청

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조

○ 오프라인 접수: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자 소인 유효)

- 등기우편만 가능, 접수기간 이외 소인은 반송예정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455, 김포시 에코센터 10074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붙임 1 참조

4. 유의사항

- 신청인(대표자)는 본 공고 본문, 온라인신청 매뉴얼, 붙임, 유의사항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미확인으로 인해 민원, 상호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사업 신청자에 귀책사유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함
- 공고일 기준, 납세증명서를 통해 경기도민 확인 가능해야함
-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발전사업자 대표자 계좌로 하여야 함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이나 현장 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 취소로 간주함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21.1.1.)에 따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및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제정·시행(2021.1.1.)으로 제출서류 및 추진과정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 지원금의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2021년도 대상자가 차년도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2022년도 동사업은 경기도 예산 수립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원기준 등이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031-985-0292)로 문의바람

6. 지원서식

- 붙임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별지 1-1. 계통연계비용 지급 신청서
 - 별지 1-2. 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비용 지원 청렴 이행서약서
 - 별지 1-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별지 1-4. 발전량 확인조사 내역표
-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 한국전력공사 계통연계 접속 공사비 영수증 사본
- 한국전력공사에서 발급하는 고지서, 세금계산서 (발전량 및 요금정산 고지서) 등
- 사업개시신고수리 공문(2021년 결재기준), 사용전 검사 확인증 각 1부
- 허가증 상의 대표자 명의 입금 통장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통장)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 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 및 협동조합 정관(해당시) 각 1부.
- (법인) 사업자 등록증 1부. 끝.

[붙임 1] 체크리스트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비 지원사업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신청서	1-1	지급 신청서 1부	별지참조
	1-2	청렴 이행서약서 1부	별지참조
	1-3	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 동의서 1부	별지참조
	1-4	발전량 내역 조사표	별지참조
부대서류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한국전력공사 계통연계 접속 공사비 영수증 사본	고지서, 세금계산서로 대체가능
		한국전력공사 발전량, 요금정산 고지서 (발전량 확인가능 서류 ex) 세금계산서)	E-mail 고지서 종이고지서,세금계산서
		<u>사업개시신고수리 공문 사본 (2021년 결재공문)</u>	시/군 발급
		사용전 검사 확인증 사본	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
		허가증 상의 대표자 명의 입금통장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통장사본
		국세 납세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대표자의 주소지는
		지방세 납세 증명서	경기도에 한하여 지원
		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 및 협동조합 정관 ※ 협동조합만 해당	각 1부 (정관상에 에너지 사업 명시 확인)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 인정

【별지 1-1】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비용 지급 신청서					
상호[발전소명칭]		[발전소]			
신 청 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 -	이메일	@	
발전소 정보	사업장소				설비용량 kW
	발전사업 허가일		년 월 일		
	개시신고 수리일		년 월 일		
계통연계 공사비용	원 (V.A.T포함)				
보조금 송금처 (사업자 본인명의)	금융기관		예금주명		
	계좌번호				
경기도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비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귀하					
※ 동의사항 1.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구비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환수는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며, 또한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됨. (신청인 : 서명) 2. 경기도는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이나,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없음. (신청인 : 서명) 3. 신청자는 공고내용을 모두 읽고 지급조건 및 의무사항에 대하여 동의함 (신청인 : 서명)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비용 지원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2. . .

대표 (서명)

*협동조합 등 단체의 경우에만 하단 기재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및 이용방법 >

- (수집목적) 사업수행(계획수립, 집행, 만족도 조사 등) 및 성과 분석 등에 활용
- (이용방법) 지원사업의 대상자(기준) 적합 여부 확인 / 향후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 정책개발의 통계, 연구 등에 활용 / 사업 홍보자료 및 신청인 의견수렴 등

수집항목	○ (대표자) 성명, 연락처, 주소, 납세증명서, 보조금 입금용 계좌 ○ (사업장) 소재지, 용량(kW), 발전소 상호, 사업개시신고 수리 계통연계 공사비, 사업자등록번호, 발전사업허가증, 발전량 조사내역표, 발전량 확인을 위한 고지서 또는 데이터, E-mail 고지서, 기타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	확인 ☐
사용목적	○ 지원기준 적합·중복 참여 여부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연구·통계자료에 활용 ○ 발전소 운영현황 수집 및 사업홍보에 활용 (발전소 사진 등)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등을 위하여 경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발전현황 등 관련 데이터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2 년 1월 1일

대표자(상호명) (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귀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비 발전량 조사표

태양광 발전소 발전량 데이터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 신청자(사업자) 성명 :
- ◆ 발전소 명 :
- ◆ 발전소 주소 :
- ◆ 사용전 검사용량(허가용량) :
- ◆ 월별 발전량 :

(단위 : kWh)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21													
2022													
합계													

- ◆ 증빙자료 : 요금안내 고지서, 세금계산서 등

2022 년 월 일

(TEL :)

대표자 : (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귀하